

부산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나5614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나56145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6. 29 선고 2018가단11419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엽

피고, 항소인 P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인

담당변호사 김현영, 김규태

변 론 종 결 2022. 5. 25.

판 결 선 고 2022. 7. 13.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6. 29. 선고 2018가단114196 판결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Q 사이에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9.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8. 5.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228,653,44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임대차

목록 중 '임대차보증금'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제1심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우종, 판사 강태규, 판사 주문식

별지